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-46호

「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2 일

고 흥 군 의 회



##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~안 제5조)

나.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및 ~ 안 제8조)

- 안 제7조(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) 등을 신설함

다.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~안 제23조)

- 안 제9조(군정참여), 안 제13조(모·부성 권리 보장) 및 안 제14조(평등한 가족) 등을 신설함

라.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4조~안 제34조)

- 안 제33조(관계기관 의견청취 등) 등을 신설함

마.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5조~안 제42조)

- 안 제41조(존속기한) 및 안 제42조(관계 규정의 준용)등을 신설함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12. 3. ~ 2024. 12. 9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- 안 제33조(관계기관 의견청취 등) 등을 신설함
- 마.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5조~안 제42조)
  - 안 제41조(존속기한) 및 안 제42조(관계 규정의 준용)등을 신설함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4. 12. 3. ~ 2024. 12. 9.(7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##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

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흥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양성평등 관련 법령”이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.
2. “양성평등”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3. “성희롱”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“국가기관 등”이라 한다.)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- 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4. “성별영향평가”란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흥군민(이하 “군민”

이라 한다)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,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군민의 권리와 의무)** ① 군민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

**제6조(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)**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며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3.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자원조달 및 운용방안
4.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
5.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시책

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,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등)** ①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

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추진실적의 평가)**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

**제9조(군정참여)**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군수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공직에서의 양성평등)**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·승진·포상·교육훈련 등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,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·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경제활동의 참여)**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·경력개발·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일·가정 양립 지원)**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
2.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
3.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
4.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
5.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
6.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
7.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모·부성 권리 보장)** ① 군수는 임신, 출산,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,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, 출산,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출산 준비금 및 신생아 양육비
2. 임신부에 대한 지원
3. 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지원
4.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기준, 금액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평등한 가족)**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한 부모 가족, 조손가족, 장애인가족,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양성평등 의식제고)** 군수는 가정·학교·영유아시설·평생교육시설·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범죄의 방지 등)** ① 군수는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, 교육,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복지증진)**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가족,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, 부부교육, 가족생활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, 문화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, 직업훈련 등 양성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8조(건강증진)**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,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·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양성평등 문화조성)**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·축적·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, 편견,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(양성평등주간)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단체 등의 지원)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,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국제협력의 지원) 군수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양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3조(유공자 표창 및 포상)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, 단체 및 기관, 소속 공무원에게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4장 양성평등정책위원회

제24조(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25조(기능)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양성평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양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2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고흥군의회 의원, 양성평등 정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27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

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**제2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**제2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**제30조(위원의 해촉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2.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

3.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4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
5.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

6. 그 밖에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31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2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33조(관계기관 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4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5장 양성평등기금

제35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2. 여성인력양성 및 여성 자원봉사 활동
3.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
4.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

제37조(기금의 관리) ① 군수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38조(기금의 관리·운용 심의)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기금운용계획
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  3. 지원 대상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
  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.

**제39조(기금관리공무원)**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 운용관: 업무담당과장
2. 기금 출납원: 업무담당팀장

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40조(기금의 결산 및 보고)**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40조의 기금운용계획서,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제41조(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42조(관계 규정의 준용)** 기금집행·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「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